

국내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저작권관련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Contents of Medical Library Web Site

최 흥 식(Hung-Sik Choi)*

윤 미 희(Mi-Hui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3. 미국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와 저작권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 2. 연구 방법과 범위 | III. 조사내용 및 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1. 조사기관 선정 및 현황분석 |
| 1. 웹과 도서관 | 2. 선정된 기관의 웹사이트 분석 |
| 2. 저작권과 도서관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자들의 올바른 정보구축과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나 상호대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2개의 국내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웹사이트에 나타낸 도서관은 9개 대학 (28%)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사용용어는 '저작권법'(4개(44.4%))이나 '저작권'(3개(33.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위치는 공지사항 및 도서관 안내와 이용안내 메뉴 아래 위치하고 있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세부영역은 자료복사와·전송, 원문 DB이용, 국내외학위논문서비스, FAX/파일전송, Image(Ariel), 해외상호대차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도서관의 올바른 인식과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주제어: 의과대학도서관, 저작권, 지적재산권, 웹사이트, 도서관 웹사이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uce a librarian to construct databases lawfully and the user with a copyright and the fair use. Based on information from web sites, the domestic medical libraries(32) were investigated for analyzing how to deal with copyright problems. The results show that only 28% of the medical libraries provide users with information on copyright at their web site. The terminology used was different among libraries. 44.4% of the libraries use 'copyright law' and 33.3% 'copyright'. The terminology appeared at the 'notice' menu and 'library guidance' menu. The detail part of copyright contents was shown at 'the data copy and transmission', 'full text DB use', 'thesis and dissertation service', 'FAX/file transfer', 'Image(Ariel)', and 'interlibrary loan'. In general, there was a necessity t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and fair use.

Key Words: Medical Library,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b Site, Library Web Sit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choi6367@hanmail.net) (제1저자)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대학원(aprileo@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11월 30일 •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웹(Web)을 통한 정보접근과 이용은 그 효용성에 있어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한다.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들이 고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일반 단체는 물론, 개인들까지도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현실을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웹을 통한 표현과 접근 및 이용은 지식정보시대에 반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여기서 웹은 많은 메리트를 제공한다. 소장 자료들을 나타낼 수 있고, 원거리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하다면 원문정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많은 도서관들은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편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 웹사이트는 대부분 유익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웹자원을 견고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도서관 웹사이트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손끝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접근과 검색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도서관 웹사이트에 구축된 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이다. 디지털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 복제, 조작, 개변 등이 훨씬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전자복제(electro-copying)된 복제품의 경우 전통적인 종이기반 저작물의 사진복제(photocopying)와는 달리 품질의 변화가 없다(이두영, 홍재현 1996). 이 같은 특성은 도서관서비스의 효용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유출과 저작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웹서비스하려는 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전문가를 비롯한 웹사이트 관리자 등이 예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매크롬과 저작권 관련 논문들은 문제의 정도가 우려를 넘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도서관 웹사이트에 수록된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하여 나타내고,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도서관의 올바른 인식과 함께, 디지털정보구축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정당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론적 측면보다는 현재 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나있는 저작권관련내용을 대

상으로 집중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정보를 취급하는 도서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직시하여 정당한 정보구축이 되게 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차후 새로운 도서관 웹사이트를 기획하거나 갱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웹과 디지털 정보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웹은 각종 사이트에서 현실과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고, 디지털정보는 아날로그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저작권은 디지털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는 바, 최소한의 기본 내용과 추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최신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관 웹 사이트를 조사하고,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오늘날 도서관은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실행한다. 이러한 웹 정보서비스는 관리와 운영, 이용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서관과 이용자 측면을 저작권과 관련지어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즉, 저작권에 저촉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해야만 하는 도서관측과 어떤 정보라도 손쉽게 이용하려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측의 정당한 정보구축과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이 함께 도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행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정당한 이용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안내함에 있어 도서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접근이 빈번하여 이를 나타내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았다.

셋째, 국내 의과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의과대학도서관이 저작권과 밀접한 원문제공과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가 다른 관종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의과대학도서관은 전문적 정보자료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구입비용이 고가이어서 이들을 망라하여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II. 이론적 배경

1. 웹과 도서관

웹(Web)은 스위스의 입자물리학연구소(CERN)에서 Tim Berners Lee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90년 즈음에 개발되었다. 웹 기술은 Urbana-Champaign 소재 일리노이 대학교의 Marc Anderson이 개발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즉, Mosaic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었다. 그 후 수년 동안에 대규모 상용버전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서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웹 기술이 급성장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의 편리성과 정보전달을 위한 관문역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남태우, 이병기 2002). 이 같은 연유로 인하여 오늘날 웹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곧바로 웹을 이용한 것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도서관은 '소유'가 아닌 '접속'의 컨셉으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각국 도서관들은 주요 IT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앞 다퉈 '유비쿼터스 도서관 Ubiquitous Library'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대표적 검색엔진 구글(Google)의 경우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옥스포드대학, 뉴욕공공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도서관 프로젝트인 'Google Library Project' (<http://books.google.com/googleprint/library.html>)를 구축,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의 역내 약 45개 도서관은 온라인 합작 The European Library(<http://www.theeuropeanlibrary.org>)를 통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세르비아 등 참여국 도서관의 장서와 잡지, 논문 등에 대한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디지털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정보화 선도, <http://blog.daum.net/allimgokr/4745696>[2006.08.14]).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보형태가 아날로그 보다는 디지털형태로 구축되는 현상과 정보이용이 소유보다는 접근의 컨셉으로 이행되는 경향은 웹상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목이다. 특히, 웹을 통한 원거리 접근과 수많은 이용자들의 공동이용이 빈번한 도서관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저작권과 도서관

吳承鍾, 李海完(2004)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그 다루는 대상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고, 그것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순식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의 면에 있어서도 국제성과 세계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여, 디지털시대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세계적 유통과 함께, 국제적 법분야의 하나로 저작권법을 기술하고

있다.

정경희(2001)는 정보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창작자(저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배포자(출판사)에 의하여 시장에 배포되고, 정보관리자(도서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소비자(이용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들 네 그룹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보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면서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저작권법은 이 네 그룹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여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이로써 그 사회의 문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장치라고 저작권을 해석하고 있다.

남태우와 이병기(2002)는 콘텐츠에 대한 지적책임은 디지털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법적 문제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정보생산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저작과 콘텐츠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판단을 기대하지만,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적책임 없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지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1998년 발효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도서관을 비롯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정보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반복적인 위법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저작권침해자료의 제거요청을 수용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측정자료지원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저작권관리국에 통보하여 조언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흥식(2003)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매체 대여 및 이용문제로, 수업시간에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서관내 시청각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단순히 대출해주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을 전자매체 이용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전송과 복제문제로, 팩시밀리와 E-mail 전송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송하는 경우,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타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디스켓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매스미디어 프로그램 복제후 이용하는 경우, 원본을 재복제후 웹서비스하는 경우 등을 전송과 복제에 속하는 문제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화와 웹서비스문제로,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자 허락문제, 외국자료의 디지털화문제, 학위논문의 디지털화 및 외부기관에서 웹서비스하는 경우, 서지데이터 제작후 웹서비스하는 경우, 논문 저작자의 동의없이 웹서비스하는 경우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복사실 운영문제로, 외부업체가 복사실 운영시 저작권과 그 책임문제와 도서관이 직접 운

영시 저작권과 책임문제 등을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기타문제로 기관통합 및 분리에 의한 저작물 소유와 이용서비스문제, 전자매체가 부록으로 입수된 경우의 대출문제, 비매품자료 대출시 저작권문제, 연구보고서의 외부누출 및 대출시 문제, 영인본을 구입하여 대출하는 경우, 외국저작물의 국내법적용문제, 웹서비스 진행 가운데 취소된 사건의 배상문제, 이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문제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저작권에 관한 정보제공, 반복적인 위법자에 대한 정책수립, 저작권 침해자료의 제거요청 수용,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술적축적자료지원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디지털 형태의 전자매체 관련문제, 이를 복제 및 전송하는 문제 등을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어렵고 애민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웹과 디지털이라는 속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극소량이 아닌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정확한 정보구축과 적극적인 이용안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공정한 이용이 필요할 것이다.

3. 미국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와 저작권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국내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현황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홈페이지의 'America's Best Graduate Schools 2007'에서 'Top Medical School'를 찾았고, 상위에 소개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사이트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과대학도서관들이 저작권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도서관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vard Medical School Countway Library of Medicine은 저작물의 저자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출판을 통제하는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학생의 논문복제는 도서관에 복사료가 예치(deposit)될 때, 학생은 연구와 학술적 사용을 위해 저작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는 비배타적인 권리를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http://www.countway.med.harvard.edu/archives/guidanceTheses.shtml>[2006,08,30]>.

Johns Hopkins University Library는 만약에 주문(order) 이행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제 주문을 허용하는 것을 도서관은 거부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http://www.welch.jhu.edu/services/copyrt-w.html>[2006,08,30]>.

Washi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Bernard Becker Medical Library) 은 저작권법의 전문은 미국 법전의 제17장에 있는 저작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저작물에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것들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독점권에 대한 제한점들을 정의하고 있다<<http://becker.wustl.edu/medlib/becker.nsf/WV/E79729EA94D748E186256F3A00537E4A?OpenDocument>[2006,08,30]>.

Stanford school of Medicine Lane Medical Library는 저작권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Lane staff은 약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소스는 대학 웹사이트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면서, 스탠포드 고문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저작권과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http://lane.stanford.edu/services/research/authors.html>[2006,08,30]>.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Harvey Cushing/John Hay Whitney Medical Library)은 지불요금은 청구서가 제출될 때에 요구된다고 하면서, 도서관은 저작권 지침서에 따른다고 주지하고 있다<<http://www.med.yale.edu/library/ref/faq/questiondisplay.php4?qID=18> [2006,08,30]>.

Columbia University Health Sciences Library 는 ILL 사무실은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50페이지 이상의 아티클을 복사하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저널은 대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호나 전권의 대출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http://library.cpmc.columbia.edu/hsl/ill.html>[2006,08,30]>.

Cornell University Medical Library 는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는 도서관들의 상호대차제도와 저작권법 그리고 네트워크 및 현지계약, 규칙은 이 서비스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http://library.med.cornell.edu/Library/HTML/faq.html>[2006,08,30]>.

The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Dykes Library는 전자형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또는 복제된 모든 자료는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저작권법에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복제라는 편의를 이용하는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지하고 있다<<http://library.kumc.edu/policy/librarycomputerpolicy.html>[2006,08,30]>.

미국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저작권관련 내용화면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국 의과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웹페이지 화면

Ⅲ. 조사내용 및 결과 분석

1. 조사기관 선정 및 현황분석

가. 조사기관 선정과정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헌조사라는 방법보다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인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이때, 이용자들의 접근이 빈번한 웹사이트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하여금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주 접근하는 웹사이트에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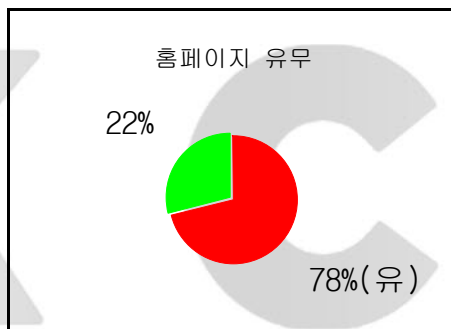
첫째, 대한의사협회 웹사이트에 나타난 메뉴 가운데, '학회/의과대학안내'의 '의과대학안내'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41개의 의과대학에 접근하였다.

둘째, 국내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도서관 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2개 의과대학도서관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1차적으로 선정된 32개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와 내용을 웹페이지에 나타난 9개 의과대학도서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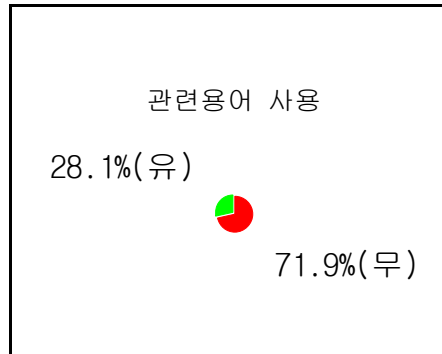
나. 선정과정에 나타난 현황분석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41개 의과대학은 자체 홈페이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2(78%)개 의과대학은 자체 도서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9(22%)개 도서관도 본교의 중앙도서관에 소속되어 '의학분관', '의학자료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형태적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의과대학이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앙도서관 소속의 '의학분관'으로 운영되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 메인화면부터 시작하여 전체 메뉴가 본교학생이거나, 교직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었으며, 소장자료검색이나 FAQ, 이용안내와 같은 내용 이외의 메뉴는 모두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국내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 현황

1차적으로 선정된 32개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작권 관련용어가 웹사이트에 나타난 도서관은 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천대, 이주대, 영남대, 관동대, 충북대 의과대학도서관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도서관이 4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기·인천이 2곳, 경북과 강원, 충북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은 28.1%로 대부분의 의과대학도서관이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및 경기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대학도서관이 지방 소재의 도서관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인식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서관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의 인식과 정당한 정보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소재 의과대학도서관은 더 많은 인식과 준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웹사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저작권 관련용어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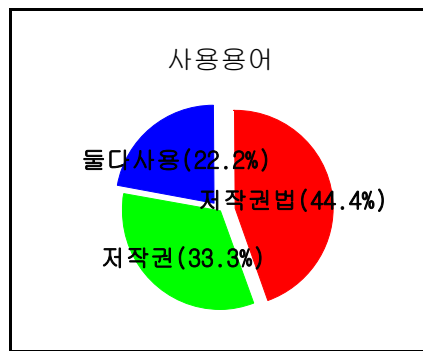
2. 선정된 기관의 웹사이트 분석

가. 선정기관과 용어 사용현황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로는 저작권,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지식소유권, copyright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된다. 그러나 법률용어사전에 의하면 이들은 의미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저작권(저작권[법률용어], 2006)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낸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작품 등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어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저작권법(저작권법[법률용어], 2006)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공포되고, 1986년 법률 제3916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는 법률조항 표기와 함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법률용어], 2006)은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opyright는 저작권의 단순 영문표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용어를 전제로 조사대상인 9개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과 ‘저작권법’이라는 2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44.4%)개 도서관이 ‘저작권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3(33.3%)개 도서관이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천의대와 가톨릭의대(서울소재)는 2개(22.2%)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보다 ‘저작권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명확히 표기함

으로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을 확실하게 상기시킬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용어자체의 어감이 흔히 나타나는 일반용어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의과대학도서관과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용된 표기용어는 <그림 4>와 같다.



	가천대	가톨릭대	관동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충북대
저작권	0	0	0	0			0		
저작권법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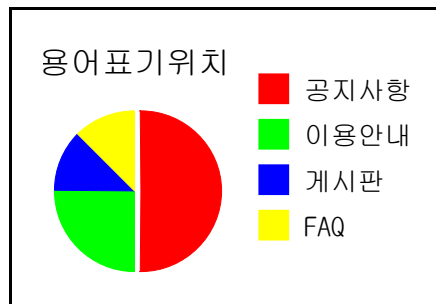
<그림 4> 웹에 나타난 표기용어

나. 용어표기 위치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초기화면의 메인 메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메인메뉴 가운데, 공지사항 메뉴 아래 표기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 안내와 이용안내, 게시판과 FAQ 메뉴 순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먼저, 공지사항 메뉴에 위치한 경우는 4개 도서관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지사항은 도서관에서 주요 사안을 나타내어 이용자에게 반드시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지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거나 참고용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사항에 나타내는 일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용자에게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안내 메뉴 아래 나타난 경우는 3개 도서관으로 33.3%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용안내와 FAQ 메뉴 아래에 위치한 경우는 각각 2개 기관씩 11.1%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가운데, 충북대 의과대학도서관은 공지사항과 FAQ, 서울대는 도서관안내와 게시판에 모두 표기하고 있었다. 이 같은 메뉴들은 이용자에게 도서관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용자들의 빈번한 접근이 예상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표기한 것은 이용자의 출입이 많은 곳에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별 용어 표기 메뉴명은 <그림 5>와 같다



기관명	용어 표기 위치
가천대	공지사항, 도서관안내
가톨릭대	공지사항
관동대	이용안내
서울대	도서관안내, 게시판
이주대	공지사항
연세대	도서관안내
영남대	이용안내
울산대	FAQ
충북대	공지사항, FAQ

<그림 5> 도서관별 용어표기위치

다. 접근 용이성

일반적으로 각 메뉴의 단계는 네비게이션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이트 네비게이션을 기획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 중의 하나로 '3클릭 5초 법칙'이 있다. 3번 클릭 전에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5초 이내에 어디로 이동할지, 이동할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의 구조도 가능하면 3단계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http://cezio.new21.org[2002.08.23]).

본 연구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나타나 있는 위치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메인 메뉴나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번 클릭 후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4개(44.44%), 2번 클릭 후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이 4개(44.44%)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도서관이 메인메뉴에서 2~3번 클릭 후 저작권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도서관도 1번 클릭 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

적 모든 도서관이 3번 클릭 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접근하는 단계를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표 1> 도서관별 용어접근 클릭횟수

도서관명	접근 단계	클릭 횟수
가천대	메인 → 공지사항 → 글(번호5번)	2번
	메인 → 도서관안내 → 운영규정(제 7장 제 32조)	
가톨릭대	메인 → 공지사항 → 글(28번, 143번, 190번)	2번
관동대	메인 → 이용안내 → 상호대차	2번
서울대	메인 → 도서관안내 → 도서관소개 → 의과도서관 운영규정(제 3장 제 20조)	3번
	메인 → 도서관안내 → 이용안내 → 자료복사	
	메인 → 게시판 → 공지사항 → 글(14,16,20,32 참조)	
이주대	메인 → 공지사항 → 글(1번)	2번
연세대	메인 → 도서관안내 → 알려드립니다 → 글 33번	3번
영남대	메인 → 이용안내	1번
울산대	메인 → FAQ → 원문제공서비스 → One-stop Service의 복사부분	3번
충북대	메인 → 이용자마당 → 공지사항 → 글(4번)	3번
	메인 → 이용자마당 → FAQ → 글(7번)	

라. 내용 분석

본 연구는 의과대학도서관이 어떤 영역에서 저작권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도서관이 앞으로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부영역과 실제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선정된 도서관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사항은 가능한 변형 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미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언급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누락된 영역과 잘못된 용어로 표현된 부분을 상호 바로 잡아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도서관에서는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까지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웹사이트에 나타난 실제기술내용

선정된 의과대학도서관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천대 의과대학도서관은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및 해외소재 한국관련자료)들의 복제·전송 방식 원문 서비스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로 인하여 유료로 처리되며, 보상금은 기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서, 원문서비스는 도서관내 지정된 국회 전자도서관 검색용 PC에서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 7장 제 32조(자료의 복사)에 의거 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

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도서관은 DDOD(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해외박사학위논문은 원저자 및 그 대행사인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BHIL(Bell&Howell Information and Learning)사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받고 있고, 총 24개 학문분야의 복미 및 일부 유럽 지역의 분야별 TOP 10 School에서 수여된 논문이라고 소개하면서, DDOD 서비스는 KERIS에서 운영하는 RISS4U.net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회원 등록 후, 이용하기 바란다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공용 ID/PW가 '공동 사용 저작권 위배'로 경고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간 문헌의 FAX/파일전송 및 국회도서관 원문이용시스템이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관동대 의과대학도서관은 해외상호대차 영역에서 영국 국립 중앙도서관, 서울대의 Korea Medras Center, 해외 문헌복사 대행업체의 금액책정에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요금은 Article 단위로 부과되며 일반 항공우편의 경우 비영리 기관에 한해 저작권료가 부가되지만 Ariel인 경우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저작권료가 부과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규정(개정 2001.1.1. 규칙 제호 제 장 제0 조)에 나타난 자료복제 부분에서 자료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안내메뉴의 자료복사부분에서는 단행본의 전권복사와 기타 저작권에 관계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나타내고 있고, 공지사항에서도 학위논문 원문서비스 이용(공지사항 14번(2006-3-13), 16번(2006-3-2), 20번(2005-12-28), 32번(2005-09-28))에 관해 저작권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주대 의과대학도서관은 의학문헌정보센터 전산시스템 교체와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원문복사 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가 웹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공지하면서, 현재 저작권법 및 회원교간의 이용요금 문제로 당분간 문헌신청은 기존의 방법대로 운영하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도서관은 2004년 7월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될 때까지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원문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있었다.

영남대 의과대학도서관은 "가능한 작업 및 요금"의 복사 부분에서 "CD무료(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자료에 한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울산대 의과대학도서관은 FAQ 메뉴를 통해 저작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청한 문헌을 인쇄물

1) 제20조(자료의 복제)

- ① 도서관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관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② 분관장은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자료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이 아니라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질문에 파일 전송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므로 파일로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다.

충북대 의과대학도서관은 상호대차의 FAX 및 Image(Ariel) 신청 일시 중단 안내에서 저작권법 도서관 보상금 적용기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저작권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의과대학 협의회 및 도서관에서 권리침해를 위한 조치(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를 취하기 전에는 상호대차에서 FAX 및 Image(Ariel) 신청은 일시 중단하고 일반우편 및 빠른우편으로만 신청을 받겠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FAX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타 기관에 FAX 신청을 해도 FAX로 전송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FAQ에서도 도서관 자료는 무한정 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작권법 제 28조 제 1항, 제 1호를 보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이해시키고 있다. 추가적으로, 도서 등의 복사에서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서 제시하는 양만큼만 복사하여 이용하기를 명시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2) 내용분석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디지털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된다. 특히 복제와 전송문제는 손쉽게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오늘날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는 물론,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웹서비스 한다. 정보커뮤니케이션에서 생산자와 이용자의 사이에 있는 도서관은 이러한 저작물을 문제없이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의 실제적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기술된 내용의 영역은 자료복사와·전송, 원문 DB이용, 국내외학위논문서비스, FAX/파일전송, Image(Ariel), 해외상호대차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과대학도서관의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부분 상호대차와 복사서비스 영역에 속한다. 자료 및 원문복사에 관하여 언급한 곳은 5개 기관(55.6%)으로 나타남으로서 복사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은 원문서비스와 파일전송, 자료복사에 대해서만 언급한 곳은 각각 2개 기관(22.2%)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자(최흥식, 2003)가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FAQ 내용 가운데 저작권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취합한 이후에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15가지 분야에 총 30개 질의로 나타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매체 대여 후 이용에 관한 문제와 전송에 따른 문제가 각각 4가지(1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제문제와 디지털화 문제, 웹서비스 문제, 저작권법 해석질의가 각각 3가지(10.00%), 복사실 운영 2가지(6.67%), 기타 1가지(3.33%) 문제가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도 복제영역에 속하는 자료 및 원문복사문제와 전송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호대차문제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관 등에서 현실적으로 예견될 문제를 살펴보고 체크하여 미연에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영역별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서비스영역별 기술내용

도서관	명시내용
가천대	복사·전송, 원문 DB
가톨릭대	해외박사학위논문, FAX/파일전송, 원문이용시스템
관동대	해외상호대차
서울대	자료복사, 학위논문 원문서비스
이주대	원문복사
연세대	학위논문 원문 서비스
영남대	자료복사
울산대	파일전송
충북대	Fax 및 Image(Ariel), 자료복사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도서관을 독자적으로 혹은 중앙도서관의 분관형태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한 웹 정보서비스에 기초적인 여건과 준비가 되어있었다. 국내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32(76.2%)개 대학이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도서관은 본교의 중앙도서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적으로 선정된 32개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웹사이트에 나타난 도서관은 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비율의 2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의과대학도서관이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고, 저작권과 관련된 도서관의 인식과 주지안내가 주요내용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의 인식과 정당한 서비스에 만전을 꾀하는 정책적 판단과 새로운 웹사이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및 경기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대학도서관이 6곳, 지방 소재의 도서관이 3곳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소재 의과대학도서관은 더 많은 인지와 준비가 절실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운데, 웹사이트에 나타난 용어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이라는 2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개(44.4%) 도서관이 ‘저작권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3개(33.3%) 도서관이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곳은 2개(22.2%)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저작권 보다 이용자들이 하여금 법적 구속력을 강하고 확실하게 상기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한다.

다섯째,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가 표기된 위치는 웹사이트 메인메뉴에 나타난 경우는 없었고, 공지사항 메뉴 아래 표기된 경우가 4개 도서관(44.4%), 도서관 안내와 이용안내가 3개 도서관(33.3%), 게시판과 FAQ 메뉴가 각각 2개 도서관(11.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빈번한 접근이 예상되는 위치에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의 접근 용이성은 3번 클릭 후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4개(44.4%), 2번 클릭 후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이 4개(44.4%)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도서관이 메인메뉴에서 2~3번 클릭 후 저작권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도서관도 1번 클릭 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모든 도서관이 3번 클릭 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일곱째,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내용을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에 기술된 내용의 영역은 자료복사와 전송, 원문 DB이용, 국내외학위논문서비스, FAX/파일전송, Image(Ariel), 해외상호대차로 나타났다. 자료 및 원문복사에 관해서 언급한 곳은 5개 기관(55.6%), 원문서비스와 파일전송, 자료복사에 대해서만 언급한 곳은 각각 2개 기관(22.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부영역은 도서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향후 도서관 웹사이트의 개정과 새로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도서관의 올바른 인식을 나타내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정당한 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디지털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정보화 선도.

<<http://blog.daum.net/allimgokr/4745696>> [cited 2006.08.14].

吳承鍾, 李海完. 著作權法. 서울: 博英社, 2004. p.iii.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 13권, 제 2호

(1996), pp.189-221.

저작권[법률용어].

〈<http://terms.naver.com/item.php?dlid=3&docid=460>〉[cited 2006,08,23]

저작권법. 〈http://www.lawnb.com/main/p__index.asp〉 [cited 2006,08,23]

저작권법[법률용어].

〈<http://terms.naver.com/item.php?dlid=3&docid=730>〉 [cited 2006,08,07]

지적재산권[법률용어].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kind=&query=%C1%F6%C0%FB%BC%D2%C0%AF%B1%C7&page=3>〉 [cited 2006,08,07]

정경희.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

최흥식. “국내 대학도서관웹사이트 메뉴구조와 용어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9권 제4호(2002), pp.137-161.

_____. “대학도서관웹사이트의 FAQ 내용분석을 통한 이용자안내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2003), pp.219-239.

컴퓨터용어 대사전 편찬위원회. 컴퓨터 용어 대사전. 서울: 정보문화사, 1998.

홍재현.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pp.21-45.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pp.505-525.

Arms, William Y.(2000). Digital Libraries. Massachusett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남태우, 이병기 공역. 디지털도서관의 이해. 군포,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2. pp.43-5. 158.

The European Library. 〈<http://www.theeuropeanlibrary.org>〉 [cited 2006,08,23]

Google Library Project. 〈<http://books.google.com/googleprint/library.html>〉 [cited 2006,08,23]

〈국내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

가천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lib.gachon.ac.kr/>〉 [cited 2006,08,07]

가톨릭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lib.cuk.ac.kr/>〉 [cited 2006,08,07]

관동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www.kwandong.ac.kr/mlib/>〉 [cited 2006,08,07]

서울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medlib.snu.ac.kr/>〉 [cited 2006,08,07]

아주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medlib.ajou.ac.kr/asp/amimc/>〉 [cited 2006,08,07]

연세대 의과대학도서관. 〈<http://ymlib.yonsei.ac.kr/ymlib/default.asp>〉 [cited 2006,08,07]

영남대 의과대학도서관 . <<http://165.229.204.55/>> [cited 2006,08,07]

울산대 의과대학도서관 . <<http://uml.amc.seoul.kr/>> [cited 2006,08,07]

충북대 의과대학도서관 . <<http://medweb.chungbuk.ac.kr/>> [cited 2006,08,07]

<미국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

Columbia University Health Sciences Library.

<<http://library.cpmc.columbia.edu/hsl/ill.html>> [cited 2006,08,30]

Cornell University Medical Library.

<<http://library.med.cornell.edu/Library/HTML/faq.html>> [cited 2006,08,30]

Havard Medical School Countway Library of Medicine.

<<http://www.countway.med.harvard.edu/archives/guidanceTheses.shtml>> [cited 2006,08,30]

Johns Hopkins University Library.

<<http://www.welch.jhu.edu/services/copyrt-w.html>> [cited 2006,08,30]

Stanford school of Medicine Lane Medical Library.

<<http://lane.stanford.edu/services/research/authors.html>> [cited 2006,08,30]

The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Dykes Library.

<<http://library.kumc.edu/policy/librarycomputerpolicy.html>> [cited 2006,08,30]

Washi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Bernard Becker Medical Library).

<<http://becker.wustl.edu/medlib/becker.nsf/WV/E79729EA94D748E186256F3A00537E4A?OpenDocument>> [cited 2006,08,30]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Harvey Cushing/John Hay Whitney Medical Library).

<<http://www.med.yale.edu/library/ref/faq/questiondisplay.php4?qID=18>> [cited 2006,08,30]

к с і